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농업기계 구매자금 등
우선지원 근거 마련〉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657호)

2025.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농업기계 구매자금 등 우선지원 근거 마련 ...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7. 23.

다. 회 부 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되면서 농촌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농업기계의 파손, 농지 황폐화, 생산력 저하 등의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발생한 농축산 분야 피해액 1천 726억원 중 농업기계 피해가 438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구입 등 자금 지원을 산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농업기계 구매자금 등 우선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제3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또는 관련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하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에 해당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신설></u>	제4조(자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u>

다. 검토의견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사망 27명, 부상 156명의 인명 피해와 1조 818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고, 약 10만 4천 ha의 산림을 소실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¹⁾를 야기하였음.

이와 같이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음.

【 최근 산불 현황 】

구 분	산불 명칭	연도	총 피해면적 (ha)	주요 피해 지역
1	2025년 3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	2025년	3,397.00	경남 산청, 하동
			99,289.00	경북 의성 외 5개시·군
			1,190.00	울산 울주 온양
			259.60	대구 북
2	2023년 전국 산불	2023년	179.10	경남 합천 용주
			128.50	경남 하동 화개
			1,337.00	충남 홍성 서부
			889.36	충남 금산·대전 서구
			681.72	전남 함평 대동
			188.35	전남 순천 송광
			244.50	경북 영주 평은
			120.69	강원 강릉 난곡
3	2022년 울진·삼척 산불	2022년	405.69	경북 영덕 지품
			813.89	경남 합천·고령
			16,301.98	경북 울진, 강원 삼척
			184.01	강원 영월 김삿갓
			4,190.38	강원 강릉·동해
			130.00	경북 봉화 봉화
			158.11	충남 서산 운산
			225.72	경북 군위 삼국유사
4	2021년 대형산불	2021년	716.31	강원 양구 양구
			228.76	경북 울진 근남
			660.82	경남 밀양 부북
			307.00	경북 안동 임동
5	2020년 동해안 산불	2020년	112.00	경북 예천 감천
			519.00	울산 울주 웅촌
			1,944.00	경북 안동 풍천
			123.20	강원 고성 토성

※ 자료: 산림청 제출

【음영】 : 피해면적 1,000 ha 이상 대형산불

1)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산불로 무너진 국민의 삶, 정부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2025. 5. 2)

이러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업 분야의 피해는 단순한 농작물 소실 뿐만 아니라, 영농 활동의 근간이 되는 생산 기반인 농업기계의 파손도 수반된다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가중될 소지가 있음..

트랙터와 경운기 등 고가의 필수 농업기계가 파손될 경우 당장의 영농 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농가 개인이 이를 다시 마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대형 산불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농 기반을 상실한 농민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 농업기계 구입 등과 관련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농식품부는 '25년 3월 대형산불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²⁾ 및 동법 시행령³⁾에 따라, 특별재난지역⁴⁾ 피해 주민에게 농업기계 구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선례가 있으나, 지금까지 선포된 총 61건(자연재난 46건, 사회재난 15건)⁵⁾의 특별재난지역 중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해당 사례가 유일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4) (특별재난지역 선포): (3.22.)경남 산청/ (3.24.)울산 울주,경북 의성,경남 하동/(3.27.)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5.5.2.) 발췌]

5) 참고자료: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2025. 6월 기준) 참조(p 8)

【 특별재난지역 농업기계 구입 관련 자금지원 내역(2025. 5.) 】

- 농업기계 구입 용자 기존 이용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상환연기**(대출기간 최대 2년 연장)* 및 **이자감면**(최대 2년)
 - * 피해를 규모에 따라 상환연기 기간 설정: (피해율 30~50%미만) 1년, (50% 이상) 2년
- 농업기계 구입지원 자금 증액 및 금리 인하
 - 자금 산불 피해로 인한 추가 소요액 **200억원 증액**(현재 5,500억원)
 - 증액 자금(200억원) 대상 기존 대비 **0.5%p 금리 인하**(현재 연 2%)
- 농업기계 용자한도액 상향
 -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대상 **‘25년 중** 농업기계 구입시 모델규격별 기존 **용자한도액** 대비 **20% 상향** 지원
 - * 기종·규격별 평균 판매가의 약 80% 수준으로 용자한도액이 설정되며 20% 상향시 소형 농기계는 판매가 수준의 용자 가능
 - * 농기계별 용자한도 : 경운기 297만원, 트랙터 1,021~6,980만원, 관리기 163~1,435만원 등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이는 당시 자금 지원의 근거가 됐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경우 그 지원 범위를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농업기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는 농식품부의 정책적 고려를 통한 재량사항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의 농업기계 구입 또는 관련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인 자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한 농식품부의 농업기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은 ‘포괄적’, ‘행정적 재량’에 기반한 ‘임시 조치’이므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반면,

개정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법률에 직접’ 해당 자금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므로, 법적근거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이 해당 자금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여지가 있는 ‘임의규정’으로 규율한 것은, 이를 의무사항인 ‘강행규정’으로 규율할 경우 재정 운용의 탄력성 저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참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2025. 6월 기준)

□ 자연재난 : 46건 선포

(단위 : 명, 억원)

연번	재난명	연도	기간	선포일자	선포지역	인명피해	피해액	복구비
1	제15호 태풍 루사	2002	8.30~9.1	09. 16	16개 시도 203개 시군(전국 일원)	246	5조 1,479	7조 1,452
2	제14호 태풍 매미	2003	9.12~13	09. 22	14개 시도 156개 시군구(전국 일원)	131	4조 2,225	6조 3,922
3	대설피해	2004	3.4~5	03. 10	10개 시도 82개 시군구(전국 일원)	-	6,734	8,827
4	대설피해	2005	12.3~24	12. 29	9개 시도 57개 시군구(전국 일원)	14	5,206	7,213
5	제3호 태풍 에위니아	2006	7.9~29	07. 18 08. 10	7개 시도 39개 시군	62	1조 8,344	3조 5,125
6	10.22~24 호우·강풍·풍랑	2006	10.22~24	11. 15	강원 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1	699	1,033
7	8.4~15 집중호우	2007	8.4~15	09. 11	강원 양구	-	322	893
8	제11호 태풍 나리	2007	9.13~16	09. 20 10. 08	제주, 전남 고흥, 보성, 화순, 완도	16	1,592	3,636
9	7.23~26 호우	2008	7.23~26	08. 01	경북 봉화	8	464	1,156
10	7.11~16 호우	2009	7.11~16	07. 31	양평, 홍천, 제천, 금산, 완주, 광양, 김해, 하동	12	2,302	6,793
11	12.4~6 강풍·풍랑	2009	12.4~6	12. 24	충남 서천	-	70	43
12	7월 호우	2010	7.16~18, 23~24	08. 11	경남 합천, 충남 보령·부여	4	318	1,032
13	8.13~18 호우	2010	8.13~18	09. 03	전북 남원·익산·완주·임실·장수·진안, 전남 곡성	1	851	2,316
14	제7호 태풍 곤파스	2010	9.1~3	09. 16	경기 화성, 충남 서산·홍성·예산·태안·당진, 전남 신안	6	1,674	1,793
15	12.29~1.4 대설	2010	12.29~1.4	01. 24	전남 영암	-	383	167
16	2.11~14 대설	2011	2.11~14	03. 03	강원 강릉·삼척, 경북 울진	-	360	236

연번	재난명	연도	기간	선포일자	선포지역	인명피해	피해액	복구비
17	7.7~14 호우	2011	7.7~14	08. 02	전북 완주, 경북 청도, 경남 밀양·하동·산청	10	1,354	3,204
18	7.26~29 호우	2011	7.26~29	08. 08 08. 19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 경기 양평, 강원 화천	52	3,768	8,106
19	제9호 태풍 무이파 및 호우	2011	8.6~10	08. 19 09. 02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전북 남원·부안, 전남 완도	1	2,183	4,617
20	제14·15호 태풍 덴빈·볼라벤	2012	8.25~30	09. 03	전남 장흥, 강진, 해남, 영광, 신안	5	6,366	10,113
				09. 04	전남 고흥, 영암, 완도, 진도,			
				09. 05	광주 남구, 전북 정읍, 남원, 완주, 고창, 부안, 전남 순천, 나주, 곡성, 보성, 무안, 장성, 제주			
				09. 13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북 김제, 전남 목포, 여수, 구례, 화순, 함평			
21	제16호 태풍 산바	2012	9.16~17	09. 26	경북 포항, 경주, 김천, 고령, 성주, 경남 통영, 밀양, 거제,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전남 여수, 고흥(15개 지역)	2	3,657	9,175
22	7.11~15, 7.18 호우	2013	7.11~15, 18	07. 27	경기 가평, 강원 춘천·홍천·평창·인제	1	940	2,425
23	7.22~23 호우	2013	7.22~23	08. 09	경기 이천·여주	3	625	1,321
24	8.25 호우	2014	8.25	09. 05	부산 북, 금정, 기장, 경남 창원, 고성	2	1,131	4,449
25	9.12 지진	2016	9.12	09. 22	경북 경주		110	145
26	제18호 태풍 차바	2016	10.3~6	10. 10	울산 북구, 울주군	9	2,150	5,049
				10. 17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양산시, 제주도			
27	7월 호우	2017	7.14~16	07. 27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천안	6	872	2,876
28	11.15 지진	2017	11.15	11. 20	경북 포항시	-	850	1,800
29	6.26~7.4 태풍, 호우	2018	6.26~7.4	07. 18	전남 보성군 (보성읍, 회천면)	1	64	370
30	제19호 태풍 솔릭, 8.26~9.1 호우	2018	8.23~24, 8.26~9.1	09. 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 (함양읍·병곡면)	2	507	1,338
31	제25호 태풍 콩레이	2018	10.4~7	10. 24	전남 고흥 (동일면), 완도 (청산면, 소안면) 경북 영덕군, 경주 (외동읍, 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 남부면)	2	549	2,360
32	제13호 태풍 링링	2019	9.6~7	9. 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 (흑산면)	3	334	1,590
33	제18호 태풍 미탁	2019	10.1~4.	10. 10	강원 삼척, 경북 울진·영덕	15	1,677	9,388
				10. 17	강원 강릉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 (망상동), 전남 해남군, 진도 (의신면), 경북 경주·성주			

연번	재난명	연도	기간	선포일자	선포지역	인명피해	피해액	복구비
34	7.28~8.11 호우	2020	7.28~8.11	8.7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음성·제천, 충남 아산·천안	36	10,371	34,277
				8.13	전남 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 전북 남원, 경남 하동·합천			
				8.24	20개 시군구 19개 시군구의 36개 읍면동			
35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2020	9.1~9.3, 9.7	9.15	강원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2	2,214	6,063
				9.23	강원 강릉·인제·고성, 경북 포항·경주 9개 시군구의 19개 읍면동			
36	7.5~8 집중호우	2021	7.5~8	7.22	전남 장흥·해남·강진 진도군(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자산면)	4	355	1,804
37	제12호 태풍 오마이	2021	8.23~24	9.6	경북 포항시	1	211	1,050
38	8.8.~17. 호우	2022	8.8.~17.	8.22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여주시(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충남 부여군·청양군	19 (사망 16, 실종 3)	3,154	8,324
				9.1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전체), 강원 홍천군, 경기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용인시 동천동, 충남 보령시 청라면			
39	제11호 태풍 힌남노	2022	9.3~9.7	9.7	경북 포항시·경주시	11	2,440	7,802
				9.28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옥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40	12.21~24. 대설·한파·강풍	2022	12.21~24.	1.11	전북 순창군 쌍치면	-	149	52
41	6.27~7.27 호우	2023	6.27.~7.27.	7.19.	충북 청주 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세종, 전북 김제시 죽산면	51 (사망 48, 실종 3)	7,513	17,130
				8.14.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전체), 완주군, 전남 신안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			

연번	재난명	연도	기간	선포일자	선포지역	인명피해	피해액	복구비
42	제6호 태풍 카눈	2023	8.9~11.	8.14.	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	558	1,106
				8.29	강원 고성군(전체)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43	농작물 냉해	2023		8.14.	경북 의성군·청송군,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북후면,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 상주시 모동면 ※ 안동시 길안면·예안면은 호우와 중복	-	1,104	1,273
44	7.8.~19. 호우	2024	7.8.~19.	7.15.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5 (사망 4, 실종 1)	3,182	9,239
				7.25.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8.13.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남 당진시 면천면			
45	9.19.~21. 호우	2024	9.19.~21.	10.15.	전남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강진군 군동면·작천면·병영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5 (사망 1)	711	1,137
46	11.26.~28. 대설·강풍·풍랑	2024	11.26.~28.	12.18.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면·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6 (사망 5, 부상 1)	4,509	1,484

□ 사회재난 : 15건 선포

- 삼풍백화점 붕괴('95), 동해안 산불('00), 대구지하철 화재('03), 양양 산불('05), 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07), 구미 불산('12), 세월호 침몰('14), 동해안 산불('19), 코로나 19('20), 동해안 산불(울진·삼척·강릉·동해)('22), 이태원 사고('22), 충청·전남·경북, 강릉 산불('2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24), 전투기 오폭사고('25), 경북·경남·울산 산불('2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문 의 처

02)6788-5426
